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16. 12. 1. 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(‘16.9.13 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및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정(안 2조2항)
-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및 개정(안 4조1항)
- 위원의 해촉 규정을 개정(안 11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 신설(안 12조)
- 위촉위원 연임 제한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)
- 직제명 변경에 따라 ‘경리담당사무관’ 을 ‘계약담당사무관’ 으로 변경함(안 제2조제3항)
- 기타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에 따른 용어 정리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‘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’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, 적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호선 방법과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정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및 개정하였으며,
-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촉과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 신설하였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